1인 창조기업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

이 정보는 2026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은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정보를 국민의 생활중심으로 재분류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된 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데이터 정책에 따라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제공하는 생활법령은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있으며, 영리 목적의 이용을 포함하여 자유로운 활용이 보장됩니다. 이 경우 출처가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http://www.easylaw.go.kr)임을 명시해 주시고, 단순 인용이 아닌 영리목적의 이용이거나 자료의 상당 부분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법제처 법제정보담당관(044-200-6900)으로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제공하는 생활법령 중 제3자가 저작권을 갖는 저작물의 경우에는 원 저작자의 저작권 정책 및 「저작권법」에 따릅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위조 · 변조하거나 생활법령에 포함된 제3자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저작권법」 제136조부터 제138조까지)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인 창조기업]

최근 세계는 정보통신기술, 디자인 등 개인의 창의성과 전문성을 기반으로 1인이 자유롭게 창업하여 아이디어를 경제활동으로 창출할 수 있는 "1인 창조기업"이 급속하게 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약 42만개 기업이 제조업을 중심으로 1인 창조기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1년부터 이러한 1인 창조기업의 설립을 촉진하고 그 성장기반을 조성하는 등 지원•육성을 위한 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콘텐츠에서는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입주, 경영•마케팅 지원 및 사업화•특허방법 등 창업에 필요한 법령정보 등을 제공합니다.

1인 창조기업 1
1. 창조기업 알아보기 4
1.1. "1인 창조기업"이란? 4
1.1.1. 1인 창조기업의 의미 및 현황 4
2. 1인 창조기업의 창업 6
2.1. 1인 창조기업의 창업준비 6
2.1.1. 1인 창조기업의 요건 및 인정범위 6
2.2. 1인 창조기업의 창업 지원 및 절차 9
2.2.1. 1인 창조기업의 창업 지원 9
2.2.2. 1인 창조기업의 창업 절차 11
3. 1인 창조기업의 운영 15
3.1. 1인 창조기업의 성장 및 지원 15
3.1.1. 기술개발 등 지원 15
3.1.2. 사업화 지원 등 17
3.2. 1인 창조기업의 변경 및 폐업 20
3.2.1. 1인 창조기업의 변경 20
3.2.2. 1인 창조기업의 폐업 21

1. 창조기업 알아보기

1.1. "1인 창조기업"이란?

1.1.1. 1인 창조기업의 의미 및 현황

1인 창조기업의 의미

"1인 창조기업"이란

▪ “1인 창조기업”이란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명 또는 5명 미만의 공동사업자로서 상시근로자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합니다(「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 다만, 도매 및 상품중개업, 숙박업·음식점업, 부동산업 등은 1인 창조기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입니다(「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별표 1).

▪ "청년 1인 창조기업"이란 39세 이하인 청년(이하 "청년"이라 함)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1인 창조기업으로서 다음의 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합니다(「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항).

▹ 「상법」에 따른 회사로서 청년이 그 회사의 회사대표로 등기되어 있는 회사. 다만, 회사대표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청년인 회사대표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함)의 수가 청년이 아닌 회사대표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수보다 많은 회사로 한정함

▹ 청년이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

▪ 1인 창조기업은 자유롭고 창의적으로 창업하고 제품 및 지식서비스 등을 활발하게 판매할 수 있도록 사무공간 및 시설 등의 인프라뿐만 아니라 경영 및 사업화 등 판로개척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 – 사업소개 – 시설·공간·보육 – 1인 창조기업 활성화 지원사업 참조].

▪ 정부는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고 1인 창조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1인 창조기업의 성공사례 홍보사업 및 세미나 개최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4조 참조).

스타트업과 1인 창조기업

▪ "스타트업(Startup)"이란

▹ "스타트업(Startup)"이란 혁신적인 기술이나 새로운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보유해 고위험·고성장이 기대되는 신생기업을 말합니다[국토연구원, “국토” 제456호(2019. 10.) p. 7 참조]. 1인 창조기업도 스타트업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스타트업의 특성

▹ 최근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 각국에서 스타트업 창업 정책 붐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소위 액셀러레이터에 의해 발굴된 ‘고성장 창업기업’ 즉, ‘유니콘 기업’의 성공 사례 덕분입니다. 액셀러레이터는 창업공간이나 설비, 업무보조 등 하드웨어 제공 위주의 ‘인큐베이터’와 달리 창업지식과 경험, 노하우 등을 전달하는 소프트웨어 중심 지원방식을 표방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정부 또는 지자체 지원으로 각종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특히 스마트폰 확산 등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의 혁신으로 큰 비용 없이 창업이 가능한 1인 기업 등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가 늘어나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습니다[국토연구원, “국토” 제456호(2019. 10.) p. 7~8 참조].

※ 이 콘텐츠에서 “1인 창조기업”은 1인 스타트업 중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말합니다.

1인 창조기업의 현황

실태조사

▪ 창업진흥원은 1인 창조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육성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1인 창조기업의 활동현황 및 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공표해야 합니다(「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제16조, 제21조제2항,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및 제11조제1항제1호).

2025년 실태조사 결과

▪ 2025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약 116만개 기업이 전자상거래업, 제조업 및 교육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연간 약 2억 6천만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당 평균 고용종사자 규모는 1명이고, 소비자를 주요 거래대상으로 하며, 오프라인 매장에서 판매하는 방식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항목	주요 내용
기업 수	1,162,529개
업종	전자상거래업(27.9.3%), 제조업(21.2%), 교육서비스업(17.1%) 등
기업당 평균 매출	약 2억 6000만원
기업당 평균 고용	1명
주 요 거래처	소비자(B2C) 78.0%, 기업(B2B) 19.1%, 공공기관(B2G) 2.4% 등
판 매 방 식	오프라인 매장 판촉 활용 50.5%, 인터넷 활용 25.6인, 인맥 활용 14.2%
창업 준비기간	평균 13.1개월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2026. 4. 9.), "2025년 1인 창조기업 실태조사 결과 발표" 참조>

※ 1인 창조기업 실태조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 통계자료 – 주제별 통계 – 창업·벤처기업 – 1인창조기업실태>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1인 창조기업의 창업

2.1. 1인 창조기업의 창업준비

2.1.1. 1인 창조기업의 요건 및 인정범위

1인 창조기업의 요건

1인 창조기업의 요건

▪ “1인 창조기업”은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 「1인 창조기업 지원사업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3조).

▹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추었을 것

√ "창의성"이란 새로운 아이디어를 활용하여 독창적인 산물이나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 "전문성"이란 해당 분야의 교육·연수를 이수하였거나 전문자격을 취득한 경우 또는 경력이나 프로젝트 수행능력 및 그 밖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소양 등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것을 말합니다.

▹ 상시근로자 없이 사업을 영위할 것

▹ 1명 또는 5명 미만의 공동 사업자일 것

√ “공동사업자”란 공동창업자, 공동대표, 공동사업자 등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합니다.

▹ 부동산업 등 특정 업종을 영위하지 않을 것

▪ "청년 1인 창조기업"이란 39세 이하인 청년(이하 "청년"이라 함)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1인 창조기업으로서 다음의 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합니다(「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항).

▹ 「상법」에 따른 회사로서 청년이 그 회사의 회사대표로 등기되어 있는 회사. 다만, 회사대표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청년인 회사대표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함)의 수가 청년이 아닌 회사대표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수보다 많은 회사로 한정함

▹ 청년이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1인 창조기업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판단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증빙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때 요청을 받은 자는 해당 증빙서류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1인 창조기업 지원사업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4조제1항).

▹ 법인설립허가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 국민연금사업장가입자명부 또는 건강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 부동산업 등 특정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했던 계약서 또는 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해당자에 한함)

1인 창조기업의 인정범위

1인 창조기업 범위에서 제외되는 업종

▪ 주된 사업이 다음에 해당하는 업종인 경우 1인 창조기업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별표 1).

구분	해당 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1. 광업	가. 석탄, 원유 및 천연가스 광업	05
	나. 금속광업	06
	다. 비금속광물 광업; 연료용 제외	07
	라. 광업지원서비스업	08
2. 제조업	가. 담배제조업	12
	나.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19
	다. 1차 금속 제조업	24
3.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가.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35
	나. 수도사업	36
4.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가.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	37
	나.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	38
	다. 환경 정화 및 복원업	39
5. 건설업	가. 종합건설업	41
	나. 전문직별 공사업	42
6. 도매 및 소매업	가.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45
	나. 도매 및 상품중개업	46
	다. 소매업; 자동차 제외(전자상거래업은 제외)	47
7. 운수업	가.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49
	나. 수상 운송업	50
	다. 항공 운송업	51
	라.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52
8. 숙박 및 음식점업	가. 숙박업	55
	나. 음식점 및 주점업	56

9. 금융 및 보험업	가. 금융업	64
	나. 보험 및 연금업	65
	다.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그 밖의 금융지원 서비스업은 제외)	66
10. 부동산업 및 임대업	가. 부동산업	68
	나. 임대업; 부동산 제외	69
11.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가. 보건업	86
	나. 사회복지 서비스업	87
12.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91
13.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그 밖의 개인서비스업	그 밖의 개인 서비스업	96

1인 창조기업 인정의 특례

▪ 1인 창조기업이 규모 확대의 이유로 1인 창조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1인 창조기업으로 봅니다(「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 본문).

▹ 다만, 다음과 같은 사유로 1인 창조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1인 창조기업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 단서 및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 1인 창조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한 경우

√ 1인 창조기업 인정의 특례에 따른 3년의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이 중소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 창업한 1인 창조기업이 창업일이 속하는 달부터 12개월이 되는 달 말일 이전에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1인 창조기업 지원사업에 지원신청을 하는 1인 창조기업이 상시근로자를 사용한 적이 있거나 지원신청 당시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경우에는 상시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고 있는 기간이 연속으로 1개월 이상이었던 자에 한하여 지원대상으로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습니다(「1인 창조기업 지원사업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3조제1항제2호).

Q. 1인 창조기업을 창업해 사업이 잘 되면서 인력이 필요해 상시근로자를 고용했습니다. 더 이상 1인 창조기업 지원을 받을 수 없나요?

A. 1인 창조기업이 규모 확대의 이유로 1인 창조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더라도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1인 창조기업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이러한 유예기간 전에 상시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고 있는 기간이 연속으로 1개월 이상이었어야 1인 창조기업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인 창조기업으로 인정되는 자격이 있는지는 『OneClick 1인 창조기업 자격여부 확인』을 통해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 – 사업소개 – 시설·공간·보육 – 1인 창조기업 활성화 지원사업 참조].

2.2. 1인 창조기업의 창업 지원 및 절차

2.2.1. 1인 창조기업의 창업 지원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이용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란

▪ 정부는 1인 창조기업 및 1인 창조기업을 하려는 자(이하 “예비창업자”라 함)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함)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전단).

※ 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면 1인 창조기업에 대한 지원을 위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법인 또는 단체로서 공인회계사, 변호사, 세무사 또는 변리사 등 전문인력을 1명 이상 보유해야 하고, 업무지원을 위한 공간 등 시설을 모두 갖추어야 하는 등 지정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 및 별표 2 참조).

▪ 지원센터는 다음의 사업을 합니다(「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 작업공간 및 회의장 제공
- 경영·법률·세무 등의 상담
-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지원센터의 이용방법

▪ 지원센터를 이용하려면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에 회원가입을 한 후 지원센터 정회원 신청·승인을 거쳐 입주신청을 하고 입주기업으로 선정되어 지원센터에 입주해야 합니다[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 – 사업소개 – 시설·공간·보육 – 1인 창조기업 활성화 지원사업 참조].



<출처: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 – 사업소개 – 시설·공간·보육 – 1인 창조기업 활성화 지원사업>

Q. 지원센터 정회원이 입주하지 않으면 지원센터의 지원을 받을 수 없나요?

A. 입주기업이 아니라도 지원센터 정회원 또는 졸업기업인 경우 지원센터의 일부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나, 지원센터에서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지원은 지원센터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출처: 「지역창업특화지원 사업 세부관리기준」 참조>

※ "졸업자(기업)"이란 입주자(기업)이 입주 지원기간이 만료되어 일반센터에서 졸업한 자(기업)를 말합니다(「지역창업특화지원 사업 세부관리기준」 제3조제19호 참조).

지원센터의 입주대상

▪ 지원센터 입주대상은 정회원 중 다른 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은 1인 창조기업 및 예비창업자로 합니다. 다만, 주관(협력)기관의 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주관(협력)기관 승인 후 다른 직장에 재직 중이라도 지원센터에 입주할 수 있습니다(「지역창업특화지원 사업 세부관리기준」 제25조제1항 및 제2항).

▹ 외국인의 경우 만료일자가 입주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외국인등록증을 보유하거나,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및 장기체류자격취득자에 해당해야 센터에 입주할 수 있습니다(「지역창업특화지원 사업 세부관리기준」 제25조제4항).

▹ 예비창업자의 경우 입주 계약시작일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지역창업특화지원 사업 세부관리기준」 제25조제7항).

※ 사업자등록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콘텐츠의 <1인 창조기업의 창업 – 1인 창조기업의 창업 지원 및 절차 – 1인 창조기업의 창업 절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센터의 입주기간

▪ 입주기업의 안정적인 창업 활동을 위하여 입주계약 체결 단위를 6개월 이상으로 해야 하며, 센터 입주기간은 최대 2년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성과가 우수하거나 계속 지원이 필요한 경우 1년을 연장하여 최대 3년까지 입주가 가능하며, 기업당 3년을 초과하여 입주할 수 없습니다(「지역창업특화지원 사업 세부관리기준」 제27조제1항).

※ 그 밖에 지원센터의 현황, 위치 및 전화번호 등 자세한 사항은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 – 사업소개 – 시설·공간·보육 – 1인 창조기업 활성화 지원사업>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센터 입주 방법

▪ 1인 창조기업 및 예비창업자는 지원센터에 입주함으로써 작업공간을 제공받을 수 있고, 입주한 지원센터에서 진행하는 창업 상담 또는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참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 – 사업소개 – 시설·공간·보육 – 1인 창조기업 활성화 지원사업 참조].

▪ 지원센터 입주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 – 사업소개 – 시설·공간·보육 – 1인 창조기업 활성화 지원사업 참조].

▹ 입주 신청서류

√ 예비창업자: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개인/법인사업자: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4대보험 가입자 명부

지원센터의 지원 내용

작업공간 및 상담 등 지원

▪ 1인 창조기업 및 예비창업자는 지원센터에서 작업공간 및 회의실, 상담실, 휴게실 등의 공간을 제공받을 수 있고, 창업에 관한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제1호·제2호 및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 – 사업소개 – 시설·공간·보육 – 1인 창조기업 활성화 지원사업 참조].

교육훈련 지원

▹ 지원센터에 입주한 예비창업자는 기술창업 및 기업경영 등에 필요한 교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지역창업특화지원사업 세부관리기준」 제29조제1항 참조).

2.2.2. 1인 창조기업의 창업 절차

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의 종류

▪ 사업자등록에는 개인사업자 등록과 법인사업자 등록이 있습니다. 1인 창조기업을 창업하고 사업자등록을 하려면 둘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창업절차와 설립비용	설립절차가 비교적 쉽고 비용이 적게 들어 사업 규모나 자본이 적은 사업을 하기에 적합	법인 설립등기 등 절차 및 비용 필요
자금의 조달과 이익의 분배	창업자 한 사람의 자본과 노동력으로 만들어진 기업이므로 자본조달에 한계. 사업자금이나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의 사용에 제약 없음	주주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므로 기술개발, 사업확장 시 단기간에 대자본 형성이 가능. 또한 법인은 주주와 별개로 독자적인 경제주체이고 자본금이나 기업경영에서 발생한 이익은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만 인출할 수 있으므로 대표자 개인의 충동적인 회사자금 운용을 방지할 수 있어 안정적인 회사 경영이 가능
사업의 책임	경영상 발생하는 모든 문제와 부채, 그리고 손실에 대한 위험은 전적으로 사업주 개인의 책임	주주는 출자한 지분의 한도 내에서만 책임
세법상의 차이	사업주에게 종합소득세 과세. 사업주의 급여는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사업용 고정자산 및 유가증권 처분이익에 대하여는 과세를 하지 않음. 종합소득세는 6%부터 33%까지 초과누진세율 적용	법인에게 법인세 과세. 대표이사 급여는 비용으로 처리 가능. 고정자산이나 유가증권처분 이익에 대해서는 법인세 과세. 법인세율은 과세표준이 2억원 이하인 경우는 10%,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20% ※ 세법상 월 소득 180만원 이하일 경우 개인기업이 유리하고, 그 이상의 소득 발생 시 납부세금은 법인기업이 유리함

▪ <출처: 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www.startbiz.go.kr) – 참여마당 – FAQ – 기타 –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와의 차이점 참조>

사업자등록의 방법

▪ 1인 창조기업을 창업한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다음의 서류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나 그 밖에 신청인의 편의에 따라 선택한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 포함)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제2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4항,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 별지 제4호서식, 「법인세법」 제111조제1항·제4항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3호서식).

▸ 사업자등록 신청서(개인사업자용) 또는 사업자등록 신청서(법인사업자용)

▸ 다음 구분에 따른 서류(「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제4항,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제3항,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

구분	첨부서류
1.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해야 하는 사업의 경우	사업허가증 사본, 사업등록증 사본 또는 신고확인증 사본 ※ 법인설립등기 전 또는 사업의 허가·등록이나 신고 전에 사업자등록을 할 때에는 사업허가신청서 사본, 사업등록신청서 사본, 사업신고서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로 대신할 수 있음
2. 사업장을 임차하거나 전차(轉借)한 경우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사업장을 전차한 경우: 전대차계약서 사본 및 임대인의 전차동의서(임대차계약서에 전차를 할 때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 없다는 특약이 있는 경우 해당 임대차계약서 사본)**
3.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상가건물의 일부분만 임차한 경우	해당 부분의 도면
4.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3제1항에 따른 금지금 도매 및 소매업	사업자금 명세 또는 재무상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금출처명세서
5.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4항에 따른 과세유흥장소에서 영업을 경영하는 경우	사업자금 명세 또는 재무상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금출처명세서
6.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사업자 단위로 등록하려는 사업자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 외의 사업장에 대한 위의 서류 및 소재지·업태·종목 등이 적힌 종된 사업장 명세서
7. 액체연료 및 관련제품 도매업, 기체연료 및 관련제품 도매업, 차량용 주유소 운영업, 차량용 가스 충전업, 가정용 액체연료 소매업과 가정용 가스연료 소매업	사업자금 명세 또는 재무상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금출처명세서
8.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사업자금 명세 또는 재무상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금출처명세서

▪ 다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려는 사업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동의서를 추가로 첨부하여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제3항 및 별지 제5호의2서식).

▪ 개인사업자는 연간 매출액(공급대가, 이하 같음)에 따라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로 구분되므로

자기에게 맞는 올바른 과세유형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30조, 제37조제2항, 제38조제1항, 제61조, 제63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111조제2항 및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국세정책/제도-사업자등록 안내-사업자등록 신청 참조].

구분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적용 대상	연간 매출액이 1억4백만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간이과세자가 배제되는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려는 경우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으로서 연간 매출액이 1억4백만원(과세유흥장소 및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는 4천8백만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매출세액(매출액의 10%)-매입세액=납부세액	(매출액×업종별 부가가치율×10%)-공제세액=납부세액 ※ 공제세액 = 매입액(공급대가) × 0.5%
특징	물건 등을 구입하면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음	매입액(공급대가)의 0.5%만 공제받을 수 있으며, 신규사업자 또는 직전연도 매출액이 4천8백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음

<출처: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 국세신고안내 – 개인신고안내 – 부가가치세 참조>

▪ 법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 외에 법인 설립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한 때에는 법인 설립신고를 한 것으로 보고, 법인 설립신고를 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법인세법」 제109조제1항 및 제111조제5항 참조).

▪ 국세청 홈택스에 가입하고 공인인증서 등으로 로그인하면 세무서에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사업자등록 신청 및 구비서류 전자제출이 가능하며 사업자등록이 완료되면 사업자등록증 발급도 가능합니다[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 국세정책/제도 – 사업자등록 안내 – 사업자등록 신청 참조].

※ 인터넷 사업자등록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증명·등록·신청·사업장현황 – 사업자등록 신청·정정·휴폐업>에서 할 수 있습니다.

※ 법인사업자의 경우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을 통해 법인설립등기 신청 및 사업자등록 신청을 포함한 법인 설립의 전 과정을 인터넷을 통해 쉽고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 홈페이지(www.startbiz.go.kr) 설립매뉴얼 참조].

3. 1인 창조기업의 운영

3.1. 1인 창조기업의 성장 및 지원

3.1.1. 기술개발 등 지원

기술개발 지원

기술개발지원의 내용

▪ 우수한 아이디어와 기술을 보유한 1인 창조기업은 다음과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1조).

- 1인 창조기업의 단독 또는 공동 기술개발
- 1인 창조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공동 기술개발
- 그 밖에 1인 창조기업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초연구의 성과 등을 바탕으로 하여 국가 미래 유망기술과 융합기술을 중점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로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이를 연구 인력 및 시설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1인 창조기업과 협약을 맺어 연구하게 할 수 있습니다(「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6호의2).

기술개발지원의 범위

▪ 1인 창조기업의 아이디어·기술개발에 대한 지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3항 및 제11조제1항제6호).

- 기술혁신 촉진 및 기술력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 개발된 기술의 평가, 이전 및 활용에 관한 지원
- 그 밖에 창업진흥원이 1인 창조기업과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기술개발지원의 절차

▪ 기술개발에 대한 지원을 받으려는 1인 창조기업은 다음의 서류를 창업진흥원에 제출해야 합니다(「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제21조제2항,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 제11조제1항제6호, 「1인 창조기업 지원사업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29조 및 별지 제4호 서식).

- 기술개발사업 신청서
- 기술개발계획서
-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 기술개발에 대한 지원을 받는 대상자는 협약기간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기술개발사업 최종보고서를 창업진흥원에 제출해야 합니다(「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1항제6호 및 「1인 창조기업 지원사업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33조).

지식서비스 거래지원

지식서비스 거래지원의 내용

▪ 1인 창조기업의 지식서비스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식서비스를 제공하는 1인 창조기업 및 1인 창조기업으로부터 지식서비스를 제공받는 자 등은 지식서비스 거래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참조).

> ※ "지식서비스"란 지식을 집약적으로 생산·가공·활용하고, 다른 산업과 융합해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지식서비스산업 분석 및 창업 특성 연구』 창업진흥원, 2018. 1. 10. 참조).

지식서비스 거래지원의 대상

▪ 지식서비스 거래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는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1인 창조기업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는 중소기업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입니다(「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및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

지식서비스 거래지원의 신청방법

▪ 지식서비스 거래를 위한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창업진흥원에 제출해야 합니다(「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제21조제2항,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2항·제4항, 제11조제1항제4호, 「1인 창조기업 지원사업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16조 및 별지 제2호 서식).

- 지식서비스 거래지원사업 신청서
- 해당 1인 창조기업과 체결한 계약서 사본
- 해당 1인 창조기업으로부터 제공받은 지식서비스의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그 밖에 해당 1인 창조기업과의 계약 내용 및 이행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지식서비스 거래지원의 범위

▪ 지식서비스 거래지원사업의 범위는 1인 창조기업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는 중소기업 또는 비영리법인에 대한 지원금 및 그 밖에 지식서비스 거래지원을 완료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한 지원금입니다(「1인 창조기업 지원사업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15조).

> ※ 지식서비스 거래에 대한 지원을 받는 대상자는 협약기간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지식서비스 거래지원사업 최종보고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1항제4호 및 「1인 창조기업 지원사업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20조제1항).

해외진출 등 지원

해외진출 등 네트워크 프로그램 지원

▪ 1인 창조기업은 해외시장 진출의 촉진뿐만 아니라 지역별·업종별, 1인 창조기업과 우수 창업기업 간 또는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입주기업과 졸업기업 간 기술 및 인력 교류의 강화를 위해 투자유치, 제품 전시회, 전문가 세미나, 워크숍 등 네트워크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3조, 「지역창업특화지원사업 세부관리기준」 제30조제1항 및 『창업진흥원 2020년 1인 창조기업 활성화 지원사업』 참조].

< 네트워크 프로그램 지원 사례 >

ㅇㅇㅇ컴퍼니가 1인 창조기업 지원사업을 알게 된 것은 ㅇㅇ은행 핀테크기업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부터다. 신생 스타트업에게 금융사와의 네트워킹 및 협업을 추진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아마존웹서비스 크레딧과 금융사와의 네트워킹 및 협업 추진과 관련해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IT스타트업 입장에서는 금융권을 이해하기 쉽지 않고, 금융권 또한 IT 스타트업을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각각의 분야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겠지요. 이때의 갭을 네트워크 프로그램이 잘 메꿔주었어요."

<출처: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 – 고객센터 – 자료실 – 「2019년 1인 창조기업 활성화 지원사업 우수사례집」 참조>

※ 네트워크 프로그램은 지원센터 입주기업 외에 졸업기업(타 센터 포함) 및 (예비)창업기업 등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지역창업특화지원 사업 세부관리기준」 제30조제2항 참조).

※ "졸업기업"이란 지원센터의 입주자(기업)이 입주 지원기간이 만료되어 일반센터에서 졸업한 자(기업)를 말합니다(「지역창업특화지원 사업 세부관리기준」 제3조제19호).

※ 지원센터의 네트워크 프로그램은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 또는 입주한 지원센터의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3.1.2. 사업화 지원 등

사업화 지원

사업화 지원의 내용

▪ 사업 성공 가능성이 높은 아이디어를 가진 1인 창조기업으로 선정되면 아이디어의 사업화를 위한 다음과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및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4항).

- 아이디어 사업화를 위한 자문
- 시험제품 개발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
- 사업화된 제품의 마케팅 및 판로개척 등의 지원

사업화 지원의 절차

▪ 아이디어의 사업화를 위한 지원을 받으려는 1인 창조기업은 다음의 서류를 창업진흥원에 제출해야 합니다(「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제21조제2항,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제5항, 제11조제1항제7호, 「1인 창조기업 지원사업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35조 및 별지 제5호 서식).

-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사업 신청서
- 아이디어 설명서 또는 제품 설명서
- 실적 및 수상 증명서류(해당자만 첨부)
- 그 밖에 평가에 필요한 참고자료

※ 아이디어 사업화에 대한 지원을 받는 대상자는 협약기간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아이디어 사업화 최종보고서를 창업진흥원에 제출해야 합니다(「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1항제7호 및 「1인 창조기업 지원사업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39조).

· 사업비용을 지원받으려면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 또는 입주한 지원센터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한 후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어야 합니다.

· 보조금은 선정된 입주기업에게 직접 집행되지 않고, 해당 지원센터에서 입주기업의 용역 수행에 대한 증빙자료(전자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 계약서 등) 및 산출물 등을 검토하여 적정성을 판단한 후 해당 용역업체에 지급합니다.

< 마케팅 보조금 지원 사례 >

"사실 창업을 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술을 홍보하고 마케팅 전략을 세우는 것을 가장 어려워하지 않을까 싶어요. ㅇㅇㅇ은 마케팅 지원사업에 힘입어 디자인 및 상표출원 등을 마쳤고 전문매체를 통한 광고홍보 1건, 홍보동영상 제작 1건, 전자 카탈로그 제작 1건, 그리고 ㅇㅇ군센터에서 카탈로그 제작 1건을 지원받았습니다. 제품홍보뿐만 아니라 신제품으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데 큰 도움을 받아 전년대비 매출 45% 신장과 7명의 신규인력을 창출했습니다."

<출처: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 – 고객센터 – 자료실 – 「2019년 1인 창조기업 활성화 지원사업 우수사례집」 참조>

경영 지원

전문가 자문 지원

▪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고 함)의 입주기업은 마케팅, 수출판로, 지식재산권, 제품 및 기업인증 등 다양한 분야의 외부 전문가 자문 프로그램을 통해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지역창업특화지원 사업 세부관리기준」 제31조제1항·제2항 참조).

※ 전문가 자문은 지원센터 입주기업 외에 해당 지원센터 졸업기업(졸업연도로부터 3년 이내 기업에 한함)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지역창업특화지원 사업 세부관리기준」 제31조제4항 참조).

※ “졸업기업”이란 지원센터의 입주자(기업)이 입주 지원기간이 만료되어 일반센터에서 졸업한 자(기업)를 말합니다(「지역창업특화지원 사업 세부관리기준」 제3조제19호).

금융 지원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 등의 보증제도

▪ 정부는 1인 창조기업에 대하여 필요한 자금을 융자·투자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고, 설립 및 활동에 필요한 자금의 원활한 조달을 위해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및 신용보증재단으로 하여금 1인 창조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보증제도를 수립·운용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5조).

※ 1인 창조기업에 대한 보증 등 금융 지원은 다음의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및 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에서 각각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신용보증기금 홈페이지(www.kodit.co.kr)

√ 기술보증기금 홈페이지(www.kibo.or.kr)

√ 신용보증재단중앙회 홈페이지(www.koreg.or.kr)

『만화 및 애니메이션 산업 관련 분야』의 자금 및 융자 지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만화 및 애니메이션 산업 관련 분야 기업(1인 창조기업 포함)의 육성사업에 대해 자금 및 융자 등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호,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2항 및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2항).

그 밖의 지원

소득세·법인세 등의 감면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1인 창조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1인 창조기업에 대해 소득세·법인세·취득세·재산세 및 등록면허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습니다(「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전통식품 등의 품질인증 기준 완화

▪ 전통식품 및 수산전통식품을 제조하는 1인 창조기업에 대해서는 완화된 전통식품 및 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의 공장심사 심사항목 및 심사기준을 적용합니다(「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8조,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및 별표 6).

> ※ "전통식품" 및 “수산전통식품”이란 국산 농수산물을 주원료 또는 주재료로 하여 예로부터 전승되어 오는 원리에 따라 제조·가공·조리되어 우리 고유의 맛·향 및 색을 내는 식품 및 수산식품을 말합니다(「식품산업진흥법」 제2조제4호 및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특허 우선심사 신청 등

▪ 기술개발, 사업화 등과 관련해 1천만원 이상 출연·보조받거나, 벤처캐피탈, 크라우드펀딩, 엔젤투자자, 엑셀러레이터로부터 5천만원 이상 투자받은 창업 후 3년이내의 1인 창조기업이 출원한 특허·실용신안에 대하여는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특허·실용신안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 제4조제1항제2호자목(3)].

▪ 1인 창조기업 기술개발사업의 결과물에 관한 디자인 출원은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디자인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 제4조제2호자목(8)].

▪ 1인 창조기업 기술개발사업의 결과물에 관한 둘 이상의 심사착수 전인 특허·실용신안등록·상표등록·디자인등록 출원은 일괄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일괄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 제4조제1호라목).

▪ 기술개발지원 또는 아이디어의 사업화 지원, 금융지원을 받은 1인 창조기업이 당사자인 권리범위 확인심판 또는 무효심판으로서 우선심판 신청을 받은 사건에 대하여 우선심판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른 사건에 우선하여 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심판사무취급규정」 제31조제1항제16호).

3.2. 1인 창조기업의 변경 및 폐업

3.2.1. 1인 창조기업의 변경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법인전환의 필요성

▪ 개인사업자의 사업 규모가 일정규모 이상으로 성장한 경우에는, 개인사업자의 최대 소득세율이 법인의 최대 법인세율보다 높아 법인사업자로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세(稅) 부담 측면에서 유리하고, 법인사업자가 사업을 더욱 확장시키기에도 적합하므로 법인전환이 필요합니다(국세청 공식블로그 참조).

> ※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차이점에 관하여는 이 콘텐츠의 <1인 창조기업의 창업 – 1인 창조기업의 창업 지원 및 절차 – 1인 창조기업의 창업 절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인전환의 방법

▪ 현물출자: 개인사업자가 금전이 아닌 부동산, 채권, 유가증권 등을 출자해 법인을 설립하는 방법입니다. 양도소득세가 이월과세되며, 취득세 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져 세금 부담이 적고, 사업용 고정자산을 금전 대신 현물로 출자해 조세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처리기간이 길고 절차가 복잡하며 비용이 많이 듭니다(국세청 공식블로그 참조).

※ "이월과세"란 개인사업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법인에게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 양도하는 개인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이를 양수한 법인이 이후 해당 사업용 고정자산을 처분할 때 개인이 종전 사업용 고정자산을 같은 법인에게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다른 양도자산이 없다고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산출세액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제1항제6호 및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용어사전 참조).

▪ 사업의 양도·양수: 개인사업자가 모든 자산과 부채를 법인에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방법입니다. 자산과 부채 규모가 작을 때 쉽고 간단하게 법인전환할 수 있어 일반적으로 선호되는 방법입니다(국세청 공식블로그 참조).

※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에서는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업무를 할 수 없습니다(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www.startbiz.go.kr) – 참여마당 – FAQ 참조).

1인 창조기업 자격의 상실

자격상실 사유

▪ 1인 창조기업은 규모 확대의 이유로 1인 창조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될 수도 있으나,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이하 “유예기간”이라 함)은 1인 창조기업의 자격이 유지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사유로 1인 창조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1인 창조기업 자격이 상실됩니다(「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 1인 창조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한 경우
- 1인 창조기업 인정의 특례에 따른 3년의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이 중소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 창업한 1인 창조기업이 창업일이 속하는 달부터 12개월이 되는 달 말일 이전에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 1인 창조기업 지원사업에 신청하는 1인 창조기업이 상시근로자를 사용한 적이 있거나 유예기간 중에 있는 경우에는 상시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고 있는 기간이 연속으로 1개월 이상이었던 경우에만 지원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1인 창조기업 지원사업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3조제1항제2호 참조).

3.2.2. 1인 창조기업의 폐업

폐업 절차

폐업 신고

▪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폐업하려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을 신고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

제출 서류

▪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폐업을 할 때는 지체 없이 다음의 서류를 세무서장(관할 세무서장 또는 그 밖의 세무서장 중 어느 한 세무서장을 말함)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하여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2항,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및 별지 제9호서식).

- 휴업(폐업)신고서

- 사업자등록증

> ※ 사업자 폐업신고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함께 할 수도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할 때 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폐업연월일 및 사유를 기재하고 사업자등록증과 폐업신고확인서를 제출하면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따로 폐업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3항).

온라인 폐업 신고

▪ 홈택스 가입 사업자의 경우 공인인증서 등으로 로그인하여 인터넷 또는 모바일 홈택스에서 폐업 신고가 가능합니다[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 국세정책/제도 – 사업자등록 안내 – 휴폐업 참조].

- 홈택스: 증명·등록·신청·사업장현황-사업자등록 신청·정정·휴폐업
-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 앱의 “신청/제출” 또는 “모바일 민원실”

폐업 전 세금 납부

▪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일이 속하는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의 사업실적에 대해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일반과세자인 경우는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신고하고, 그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5조제3항, 제49조제1항 및 제67조제1항).

-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
  - √ 간이과세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 간이과세자 외의 사업자: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49조제1항 및 제67조제1항).

재창업 및 재기교육

재도전 사업자 지원 프로그램

▪ 경영위기 기업과 사업 실패 후 재기를 준비 또는 진행하는 재도전 기업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재도전종합지원센터에서 다음과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재도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www.rechallenge.or.kr)].

- 법률, 세무, 회생절차 등 심층 상담
- 재창업자금, 구조개선전용자금 지원 및 교육
- 자금지원기업 신용회복
- 진로제시컨설팅, 회생컨설팅
- 1:1 멘토링을 통한 사후관리

지원받는 방법

▪ 재도전종합지원센터의 재도전 사업자 지원 프로그램은 온라인 상담 예약 시스템을 통해 전문 분야별

예약이 가능합니다[재도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www.rechallenge.or.kr)].

▪ 법률, 회생 등 전문 상담은 서울 재도전종합지원센터에서 일괄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재도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www.rechallenge.or.kr)].

> ※ 재도전종합지원센터의 위치 및 재도전 사업자 지원 프로그램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재도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www.rechallenge.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